

교직원 보수규정 운영세칙

2003. 06. 27. 전면개정	2012. 12. 01. 부분개정	2018. 11. 01. 부분개정
2004. 05. 13. 부분개정	2013. 08. 01. 부분개정	2019. 03. 01. 부분개정
2005. 06. 01. 부분개정	2013. 09. 01. 부분개정	2021. 04. 01. 부분개정
2006. 01. 17. 부분개정	2014. 03. 01. 부분개정	2021. 06. 15. 부분개정
2007. 02. 13. 부분개정	2014. 10. 01. 부분개정	2021. 12. 01. 부분개정
2010. 03. 01. 부분개정	2015. 03. 01. 부분개정	2023. 03. 01. 부분개정
2011. 03. 01. 부분개정	2016. 03. 01. 부분개정	2023. 10. 01. 부분개정
2011. 07. 19. 부분개정	2017. 06. 01. 부분개정	2025. 05. 01. 부분개정
2012. 03. 01. 부분개정	2018. 01. 01. 부분개정	

제1장 교원의 학술연구비 및 일반직원의 사무추진비 지급

제1조(목적) 교원의 연구보조비 지급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 연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직원(이하 일반행정직렬, 일반기술직렬, 행정실무직렬, 기술실무직렬, 별정직을 포함한다)의 행정사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1992.03.02., 1995.03.01., 1996.02.29., 2012.03.01., 2014.03.01.>

제2조(지급근거) ①사학기관 재무회계 관리요령 준용
 ②대전보건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제 조항
 ③이사장 훈령<신설 1995.03.01.>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액) ①교원의 학술연구비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1992.03.02., 1995.03.01., 1996.02.29., 1997.02.28., 2000.02.25.>

②학술연구비 월지급액은 총 연봉액 중 월연봉 지급액에서 별도로 정한 금액을 학술연구비로 분류하여 지급한다.

③일반직원 사무추진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4.03.01.>

제4조(지급시기) 교원의 학술연구비 및 일반직원의 사무추진비 지급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제5조(감액지급방법) ①지급시기 중 신분변동이 있어 감액 지급할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감액 지급한다.<신설 1995.03.01.>

1. 휴직자

가. 공무상 휴직자 및 파견자 : 전액지급

나. 해외 학위취득 목적 및 연구차 휴직 : 전액 미지급

다. 질병 및 기타 휴직 : 공무원수당규정 감액지급 구분표를 준용하여 봉급이 8할 지급되는 자에게는 수당의 2할 감액, 봉급이 7할 지급되는 자에게는 수당의 3할 감액, 봉급이 5할 지급되는 자에게는 수당의 5할을 감액 지급한다.

2.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경고, 시말서, 주의촉구 등은 제외한다) : 지급기간 중징

계 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교직원징계규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1, 2항외의 신분변동(이하 신규임명, 승진, 면직 등을 말한다)이 있는 교직원에 대한 월지급액은 예산 회계법 및 동 시행령 등에 의하여 계산급(지급기준액/25×실근무일수)으로 지급한다.

제2장 교직원 보직 및 관리업무, 자가운전, 야간수당 지급

제6조(목적) 대학에 근무하는 보직 교직원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보조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7조(지급근거) 대전보건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제19조(보직 및 관리업무수당), 제24조(직책수당), 제28조(규정 외 사항시의 준용규정)

제8조(지급기준 및 감액) ①교원 및 일반직원(이하 “직무대리”를 포함한다) 중 보직이 있는 자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수당지급액 있어 감액의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본 세칙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급시기) ①<삭제>

②기타 수당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제3장 삭제 <2015.03.01.>

제4장 초과근무수당 및 후생적 급여지급

제12조(목적) 이 지침은 대전보건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규정 등을 정하여 일반직원, 계약직원에게 실비 변상적인 금액과 지급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개정 1995.03.01., 2014.03.01.>

제13조(용어의 정의 및 지급근거) ①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초과라 함은 시간외, 휴일, 야간 근무수당을 말하며, 실비변상이라 함은 법정 근로시간 외의 근무한 시간을 보상함을 말한다.

②지급근거라 함은 대전보건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제20조 및 제28조(규정 외 사항 발생 시의 처리)에 명시된 사항과 공무원지급규정을 말한다.<개정 1995.03.01.>

제14조(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①이 세칙 에서 실비 변상할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간외 근무수당(정액근무초과수당)

가. 삭제 <2011.03.01.>

나. (삭제)

다. 일반직원의 정액 지급할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 수는 95. 3. 2.부터 96. 1. 31.까지는 월 13시간으로 하고, 96. 02. 01.부터는 월 18시간으로 하며, 시간당 단가는 공무원을 준용한다.<개정 2014.03.01.>

라. 일반직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

인 자를 지급대상자로 하며,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지급한다.<신설 2017.06.01.>

2. 정액근무 초과근무수당 외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

가. 직원(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명령에 의한 일과시간 외의 근무하는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하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2011.03.01.>

나. 지급액의 기준은 매년 변경되는 공무원수당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초과근무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03.01.>

다. 부서별 초과근무의 명령 및 확인은 부서장의 책임 하에 명령 및 확인한다.

라.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해당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한 후 지급하며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하지 않는다.<신설 2017.06.01.>

제15조(시간외 근무수당의 감액지급 기준) ①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중 월정액을 지급하던 교직원이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액 지급한다.

1. 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와 공무상 해외파견근무 자는 제외한다.), 징계처분 기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액 미지급한다.
2. 정액지급액 중 신규임명, 의원면직, 기타 면직자는 예산회계법 동 시행령에 의한 일 계산급(정액 지급한 금액÷25×근무일수)으로 지급한다.<개정 1995.03.01.>

제16조(연가보상비 지급기준) 연가보상비는 일반직원, 계약직원에 한하여 보상비를 지급하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개정 2014.03.01.>

제17조(지급시기) ①초과근무수당 중 정액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급여일로 하고, 정액근무수당 외의 초과근무수당은 매월 말일에서 익월 10일 사이에 지급한다.

②연가보상비는 회계말(매년 2월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상관례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제5장 임용예정자의 임시노임 지급

제18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 대학에 채용이 확정된 자의 채용예정 전에 근무하는 기간에 대하여 실비 변상적인 노임을 지급함에 목적이 있음

제19조(적용범위 및 출근상황 점검) ①이 지침은 우리대학에 채용이 확정된 교직원(계약직원, 직원, 기타 상응하는 직급)이 채용 전 학교의 상황에 따라 채용 예정전의 출근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2.03.01.>

②1항에 의하여 확정된 자가 근무함에 있어서는 채용예정 부서장이 출근상황을 확인하여 총무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본 조 1항 내지 2항에 관한 사역결의는 채용서류 중 면접확정 보고서류 등에 단서 또는 별도로 기록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임시 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제20조(노임 단가) 이 세칙에 의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임시직원”이라 한다)의 1일당

단가는 채용예정 직급의 급호 또는 계약예정 금액을 1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토요일에 한하여는 일할 금액의 50%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21조(노임의 지급 시기) 노임의 지급은 봉급일 또는 말일에 지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일반직, 조교의 봉급격차 보전수당<신설 2007.02.13.>

제22조(지급목적) 2006년도 교원 호봉단일화에 따른 교원과 일반직, 조교(이하 “직원”이라 한다)간의 봉급인상 격차율을 보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23조(지급액) ①봉급격차 보전수당의 지급 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호봉의 월봉급액에서 2%내외로 한다.

②봉급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제반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는 해당호봉의 월봉급액에 봉급격차 보전수당을 더하여 산출한다.

제7장 삭제 <2021.06.15.>

제24조 삭제 <2021.06.15.>

제25조 삭제 <2021.06.15.>

부 칙(2003. 6. 27. 전면개정)

①(시행일) 이 개정 통합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통합 전 지침 중 부칙적용) 통합 전 지침 중 부칙에 대하여는 건별로 된 종전의 지침 원문을 참고하고 관리하며 이 지침에 기재를 생략한다.

부 칙(2004. 5. 13. 개정)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증인자의 조정액지급 경과조치) 재직 중인 교직원의 조정 분 수당지급은 해당월의 일수에 따라 2004. 5. 13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2005. 6 .1 개정)

①(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17. 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13. 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1. 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1. 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19. 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201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1.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29일 이전에 임용된 조교에 대해서는 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2012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계약직(기존의 조교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2. 12. 01.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8. 01.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9. 01.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3. 01.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01.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3. 01.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6. 01.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1. 01.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전 성과연봉제 대상자는 이 개정 규정에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8. 11. 01.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8년도 종합평가 대상 성과연봉제부터 본 규정으로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전 성과연봉제 대상자는 2021학년도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2]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1] 교직원 학술연구비/사무추진비

□ 교원 학술연구비

직 급		월지급액	비 고
교	총 장	700,000	2010.03.01 개정
	교 수	600,000	"
원	부 교 수	570,000	"
	조 교 수	540,000	"

□ 직원 사무추진비 <개정 2013.08.01., 2014.10.01>

직 급		월지급액	비 고
일반행정직 일반기술직 별정직	3급 이상	600,000	
	4급	570,000	
	5급	540,000	
	6급	510,000	
	7급	459,000	
	8급	408,000	
	9급	357,000	
행정(기술)실무직 7급		325,000	
행정(기술)실무직 8급		315,000	
행정(기술)실무직 9급		294,000	

□ 직원 직급보조비 <신설 2018.01.01.>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2] 교직원 보직수당<개정 2014.10.01., 2016.03.01., 2018.11.01., 2021.04.01., 2021.12.01., 2023.10.01., 2025.05.01.>

직 위(급)	보직수당	직책수당	관리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총 장	1,100,000	500,000	본봉의 7.8%	
부 총 장	1,000,000	400,000		
대학본부의 실, 처장	450,000	300,000		150,000
산학협력단장	450,000	300,000		150,000
글로벌사업단장	450,000	300,000		150,000
대학본부의 부 실, 처장	400,000	200,000		
산학협력단 부단장	400,000	200,000		
글로벌사업 부단장	400,000	200,000		
RISE사업단장	400,000	200,000		
부 속 기 관 장	400,000	200,000		
HRD사업단장	400,000	200,000		
국제교류원장	400,000	200,000		
보건전문기술대학원장	400,000	200,000		
센터장(팀장) 및 학과장	400,000	100,000		
교양교육원장	400,000	100,000		

가. 위 표 중 겸직으로 보직을 부여한 자에 한 하여는 그 중 유리한 것 1개만 적용하여 지급한다. 단, 법인직원이 겸직하는 경우 자기운전보조비, 야간수당만 학교비에서 지급한다.
 나. 위 표 중 분류되지 않은 보직이 발생하는 경우 위에 상당하는 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분류되지 아니한 보직이 발생하는 경우 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 연봉제교원의 경우 관리수당을 20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2.03.01.>

[별표 3]당직근무수당 <2011.07.19.개정>

구 분	금 액	지급시기
야간당직	30,000	매월 말일경
일반당직	30,000	상동

[별표 4] 학사지도비 및 업무개발수당<신설 2006.01.17.>,<개정 2013.08.01., 2014.10.01.>

직 위(급)	지 급 액	비 고
학사지도비	조교수이상 50,000원	
업무개발수당	전체 직원 50,000원	

[별표 5] 삭 제 <2021.06.15.>

[별표 6] 방사선안전관리자수당<신설 2023.03.01.>

구 분	금 액	비고
방사선안전관리자	200,000	매월 급여일 지급